



외국인민원센터 업무(방문) 안내

외국인민원센터 업무 목록표(방문민원기준)

- 목록표에 없는 업무는 방문 민원이라도 관할 지시에서 처리
- 방문 외 전화, 팩스 등 나머지 민원은 관할 지시에서 처리
- * 고객센터 : 센터 업무 목록(이관), 자격·부과 업무에 한정(호전환 민원)

구 분	업무 명	센 터	지 사
자격	● 지역가입자 취득·상실·가입 제외	○	×
	● 피부양자 취득·상실·가입 제외	○	×
	● 임의계속가입자	○	×
	● 지역 세대합가, 주소 등 기재사항 변경	○	×
	● 건강보험증 발급	○	○
부과	● 외국인 보험료 즉시 산정	○	×
	● 지역보험료 조정	○	×
징수	● 보험료 수납	○	○
	● 지역보험료 자동이체·전자고지	○	○
	● 지역보험료 환급금	○	○
	● 수시 고지서 발행, 지역가상계좌 전송	○	○
보험급여	● 기타징수금 수납	○	○
	●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서 접수	△	○
	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환급 신청서 접수	△	○
건강관리	● 일반·암·영유아 건강검진표 발급	○	○
	● 전년도 미수검·신규 검진대상자 추가 등록	○	○
제증명	● 자격득실확인서 및 자격확인서	○	○
	● 보험료 산정내역서	○	○
	● 보험료 납부확인서	○	○
상담	●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일반	○	○

* '△' ... (센터) 신청서 접수 및 지사 이첩, (관할 지사) 전산등록 및 지급 등 사후 관리



서울외국인민원센터 운영 안내

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건강보험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

업무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의 **자격·부과 관련 방문 민원**

위치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97, 신도림테크노마트 **사무동 3층** (상가동 X)

오시는 길

지하철

1,2호선 신도림역 3번 출구
→ 신도림테크노마트 지하 1층 연결 (사무동 방향, 상가동 X)

버스

신도림역 하차
→ 버스 : 5619, 6411, 6511, 6611, 영등포(01, 08, 09, 12, 13)

차량

테크노마트 지하주차장
→ 주차비 ... 30분 이내 무료 (1층 데스크 확인시 3시간 무료)



[외국인센터안내]



[보험료 납부]

☎ 033-811-2000 영어, 중국어, 베트남어, 우즈베크어 상담

☎ 1577-1000 외국어 안내 6번

*상담 가능 시간 평일 09:00 ~ 18:00



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안내

- 국내 최초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건강보험에 당연가입이 됩니다.
 - ▶ 6개월 동안 2회 이상 출국으로 30일 초과 시 매달 1일마다 다시 계산
 - ▶ 1회 1개월을 초과하여 국외 체류 시 재입국일을 최초 입국일로 간주하여 계산
 - ※ 영주(F-5), 비전문취업(E-9), 결혼이민(F-6), 유학(D-2, D-4-3) … 외국인등록일(최초), 입국일
 - ※ 국내 출생 신생아 … 출생일(부 or 모 = 가입자)

○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만 구성된 세대도 세대합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.

- ▶ 주소(거소)지가 같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만 19세 미만 자녀(배우자의 자녀 포함)

외국 가족관계 확인서류 인증 기준

- 문서발행국의 외교부(또는 아포스티유) 확인을 받은서류(한글번역본 포함)
- 한국주재 외국공관서류(번역공증 포함), 출생증명서(국내 출생) 등

서류 유효기간

- 국적국 서류 … 서류 발급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9개월 유효(국내서류 3개월)

○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산정하되, 평균 미만이면 평균보험료를 부과합니다.

- ▶ 전년도 11월 기준 전체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매월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
 - ※ 난민인정자(F-2-4) 및 그 가족(F-1-6), 만 19세 미만 단독 세대 … 최저보험료 이상 부과
 - ※ 영주(F-5), 결혼이민(F-6) …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및 고지
- ▶ 보험료 경감

유학(D-2), 일반연수(D-4), 재외국민유학생(C-9), 재외동포유학생(C-10)	50%
종교(D-6), 기타(G-1) … 인도적체류허가자(G-1-6)와 그 가족(G-1-12)	30%
섬·벽지 지역 거주	50%
농·어촌 지역 거주	22%

※ 세대 단위 소득(360만원↓)과 재산(13,500만원↓)요건 동시 충족, 경감률 최대 50%(유학 등 제외)

○ 선납보험료는 매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.

- ▶ 외국인 민원센터에서는 카드 수납만 가능 ('24.2월부터는 키오스크 수납만 가능, 현금x)
 - ※ 본인부담 카드 수수료율 … 신용카드 0.8%, 체크카드 0.5%
- ▶ 자동이체 원납 시 다음 달부터 200원 감액, 이메일 고지서 수령 시 200원 감액
- ▶ 고지서가 없어도 전화 상담(☎1577-1000)하여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

건강보험 이용 방법

- 건강보험 혜택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합니다.
 - ▶ 외래 진료비의 약 40~70%, 입원 진료비의 약 80%를 공단이 부담
 - ▶ 암, 뇌혈관질환, 심장질환 진료비의 95%, 희귀, 중증난치질환 진료비의 90%를 공단이 부담
 - ▶ 건강검진: 일반건강검진, 영유아검진, 자궁경부암·대장암검진 … 본인부담 없음
 - ※ 위암, 간암, 유방암, 폐암검진 … 공단이 90% 부담(국가암검진 대상자는 무료)

병·의원(외래) 이용 방법

진료 접수	의사 진찰	진료비 납부	외국 방문 및 납부
· 외국인등록증 제시		· 처방전 받을 수 있음	· 병원 처방전 제출
	건강검진 절차		
	검진대상 여부 확인	검진기관 예약 및 방문	검진결과 통보
· 공단에서 검진확인서 발송	· 전국 검진기관 가능	· 외국인등록증 제시	· 결과지 우편 발송
· 전화로 확인(☎1577-1000)			



유의사항

- 체류기간이 종료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출국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.
 - ▶ 다만, 체류자격이 있는 출국 상실자가 6개월 내에 다시 입국하여 **출국기간 동안 단독세대로 산정한 보험료와 익월 보험료를 당일 납부**하면 입국한 날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.
- 보험료를 체납하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.
 - ▶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최대 5%의 연체금이 부과됩니다.
 - ▶ 독촉을 하여도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·재산·예금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.
 - ▶ 보험료 납부마감일의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합니다.
 - ※ 진료 단계에서 보험급여를 제한하며, 체납기간 진료비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.
 - ▶ 체납 정보를 법무부와 공유, 체납 외국인의 체류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본인신분증(외국인등록증 등)을 꼭 지참해 주세요.
 - ※ 신분증이 없으면 본인확인이 안되어 그 어떤 상담도 불가합니다.